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柳 明 鉉
特許序 指導課長

I. 序 言

오늘날 선진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經濟發展을 위해 新技術 開發에 주력함은 물론 개발된 기술의 보호·권리화를 위해 產業財產權(industrial property)으로의 연계 및 그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產業財產權이 國際通商에서 주요한 이슈로 등장되고 있고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빈발하는 이외에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에 따른 技術料(royalty) 부담 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89年 한해동안 763件에 9億 3千万弗 수준이었던 技術料 규모가 '90年에는 738件에 10億 9千万弗로 늘어나 도입 技術件당 技術料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우리 經濟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對外志向的 經濟体制인 나라로서는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로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아울러 개발 결과를 產業財產權으로 연결해 권리화하고 널리 활용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새로운 技術開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產業財產權 制度의 적극적 활용이 있어야 하겠으며, 開發된 技術이 產業界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II. 特許技術의 活用実態 및 問題点

1. 產業財產權 出願動向

우리나라의 產業財產權 制度는 과거 수년동안 팔목

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產業財產權 보호에 대한 국내적 관심도가 증가하여 '89년 처음으로 연간出願件数가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이래 '90년에는 11만 4천여건에 달해 매년 10% 이상의 급격한 신장을 보이고 있다.

출원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도 건실해지고 있어 2만 6천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이 가운데 35%가 내국인 출원으로 5년전인 '85년의 25%에 비해 크게 신장하였다.

이와 함께 電子, 精密化學等 尖端分野의 출원이 전체 특허출원의 40%를 점유하여 技術의 고도화·첨단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中小企業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中小企業의 技術開發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국가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中小企業은 특허 등록면에서 볼 때 5년전에 비해 지난해에는 4배 이상 신장한 수치를 보여 전체 등록의 30%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다.

2. 產業財產權 活用実態

特許나 實用新案 같은 產業財產權은 신규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인간의 知的 創作物이기 때문에 권리로 보호받기 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 및 연구노력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개발 결과인 產業財產權을 적절히 활용치 못하는 경우는 그것을 개발한 권리자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개발된 권리가 적극 활용되고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함이 요청되고 있으나 실제상 활용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89년 特許序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特許·實用新案의 사업화율이 20%수준에 머물러 일본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한 결과를 보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 1. 特許技術의 事業化率 比較

(單位 : %)

年 度	'82	'88	日本 ('84)
特 許	13.5	21.7	41.3
實 用 新 案	23.9	19.5	39.9
平 均	18.7	20.6	40.6

3. 產業財產權의 活用上 問題點

앞의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特許技術의 활용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에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겠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적 구성면에서 취약할 뿐만아니라 特許權을 얻기까지의 기술 개발과정에서 자산을 거의 다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정작 개발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 할 때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제품생산에 요구되는 技術·經營能力의 부족이 사업화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特許技術은 그 성질상 市場性 및 經濟性의 判断이 불확실하다는 데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외에 산업재산권의 종체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特許序이 특허기술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特許序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權利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消極的 機能에 거의 머물러, 설정된 권리가 활용되는데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이 미약했음이 事實이었다.

이와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어렵게 얻은 우수한 특허기술이 충분히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뒤따랐고, 이에따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91년 들어 특허청에서

는 문제의 심각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실질적이며 손쉬운 지원체제부터 갖춰나가고 있어 꽤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 하겠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 의욕고취 및 개발기술의 권리화 촉진을 통해 적극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현안인 製造業 競爭力 強化의 밑거름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中小企業 特許技術의 事業化 支援內容

1. 基本 方向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特許出願·登録動向 및 사업화 실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골간이 되고 있다.

사업화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자금을 신설하고 각종지원 자금을 특허기술 보유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밖에 특허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및 사업성 평가를 간편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실시함으로써 사업화시의 성공 가능성을 조기 진단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자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사업화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수요확보를 통해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술적인 면에서의 애로 사항을 해결키 위한 지도등 稅制·經營·技術의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2. 資金支援

기존의 각종 지원제도 가운데는 물론 특허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자가 수혜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으나 특허기술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부분적으로 편입·산재되어 있음으로써 지원효과가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特許技術 事業화를 위한 特別資金 신설

中小企業 構造調整基金 중 創業造成資金('91년 400억 원) 가운데서 50억원을 特許技術을 가지고서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만 지원 할 수 있도록 特別資金을 신설하였다.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 구체적인 자금운영이 이루어지는 이 자금은 비교적 좋은 조건(시설자금 3억원,

운전자금 1억원, 낸리 9%) 이어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자 및 개인발명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창업후 1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자와 수도권의 일정구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람은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관계규정의 개정을 해당기관과 협의중에 있다.

2) 技術信用保証基金과 운행자금의 연계지원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인 **기술개발資金**이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수혜의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을 이용하는데는 실제상 각 취급기관에서 부동산등 물적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더구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은 상당수가 담보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담보문제를 해결해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 하려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자의 담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협의를 마쳐 시행중에 있다.

즉 무담보 중소기업자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원하는 자는 우선 특허청 및 한국發明特許協會에 알선신청을 해야하며 특허청에서는 업종별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을 일차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선정된 중소기업자의 사업화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國立工業試驗院**에서의 試驗·分析節次를 거치게 되는데 특허청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자는 시험분석의 수수료 없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특허청은 시험·분석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중소기업자를 일정한 수만큼 선정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의뢰를 하게 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의뢰자의 신용상태나 사업 성공 가능성, 시장성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설정해 주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신용보증이 설정된 중소기업자는 이것으로써 담보능력을 갖추어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각종 은행 및 기관은 **信用保證書**가 첨부되는 경우 별도의 물적 담보요구 없이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어 손쉽게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 工業發展基金의 시제품 개발지원

商工部告示로 되어있는 **Industrial Development Fund Operation**에 특허기술을 최초로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試製品開發資金을 우선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이 새로이 마련됨으로써 生産性向上과 競争力強化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韓國機械工業振興會와 韓國電子工業振興會에서 취급되고 있는 이 자금은 연리가 6.5%로 각종 자금중 가장 낮아 기계류와 전자·전기, S/W와 관련되는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試作品 제작 지원

그리고 현재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優秀發明品의 試作品製作支援制度가 개선·강화되어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이것이 과연 등록원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성능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품을 실시 제작해 보아야 하는데 제작상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 개인이나 중소기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됨에 따라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지원의 취지가 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전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지원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각자의 부담이 너무 큼에 따라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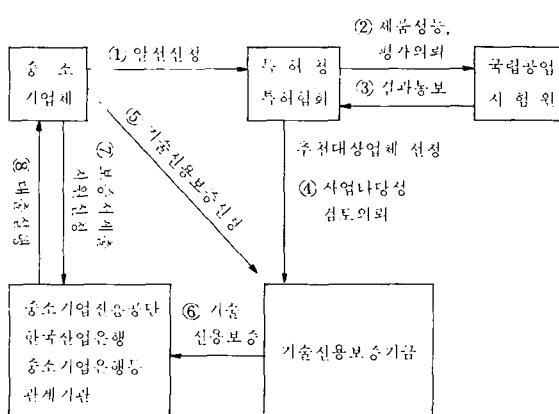


그림 1. 資金支援 基本節次圖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지원한도액을 철폐해 예산의 범위('91년 2억1천만원)내에서 영세인 및 학생에게는 제작비용 전액을 그리고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자에게는 제작비용의 90%와 80%를 각각 보조해 주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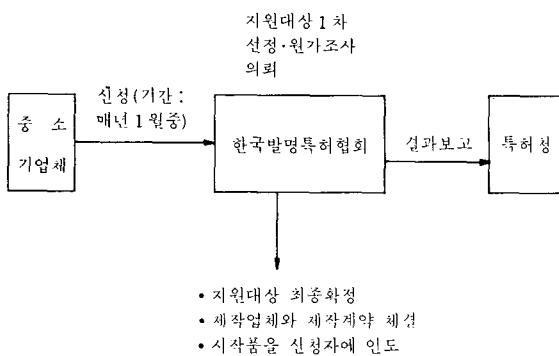


그림 2. 試作品製作 支援 節次図

5) 海外出願費用 補助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제화·긴밀화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결과를 국내에서 적극 권리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권리화하여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개인이나 중소기업자가 외국에 출원하였을 경우 당해년도 예산('91년 6,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출원건별로 40만원을 보조해 주어 기술개발 의욕과, 산업재산권 인식을 재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액이 너무 적고 또 연간 보조건수가 5건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보조금액을 현실화하고 보조 건수도 늘려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9월에 외국출원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춰 韓國發明特許協會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다.

6) 其他 支援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의 중소기업이 유망한 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업종을 전환토록 지원함으로

써 특허기술을 널리 활용토록 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가운데 事業轉換資金을 두어 상공부의 「中小企業 事業轉換計劃」에 의거해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선정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사업전환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며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함께 소득세·법인세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施設近代化 業體」선정지원 사업에서도 特許技術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은 지원업체 대상선정시 10%의 가점이 부여된다.

여기서 대상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에서 자금지원이 되며 경영·기술지도 및 정보제공·해외기술협력 알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밖에 特許技術이 매우 우수할 뿐만아니라 사업 전망은 매우 밝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해 사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創業投資會社 및 新技術金融會社와 특허 기술 보유자간의 협작투자를 적극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와 같은 투자회사들의 현황 및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특허 기술보유자의 활발한 접촉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발명특허협회내에 「特許技術事業化 情報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제공과 상담 및 알선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技術支援

특허기술의 사업화시 애로요인에서 나타나 있듯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확보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업화 제품의 성능·품질에 대한 평가능력 결여로 혁신이 부족하고, 기업 운영에 요구되고 있는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이 미약한 실정에 있다.

1) 特許技術事業化 製品의 性能 및 品質評價制 ‘实施’

특허기술은 이전에 존재치 않았던 신규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품이 어느정도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보아야 한다.

즉 다량생산에 앞서 제품을 기술적 측면에서 사전 분석·검토를 거친으로써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고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품질평가로 대외적 신뢰성 제고와 판매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신용보증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로 國立工業試驗院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國立工業試驗院의 試驗研究技術 支援規則”에 의거 특허청장이 의뢰한 특허기술 사업화 업체에 대하여 시험·분석에 따른 수수료 면제하에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규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중에 있다.

현재는 공공시험분석 기관으로 국립공업시험원과의 유기적 협조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허제품 가운데는 이곳에서 시험·분석이 곤란한 것도 다소 있어 점차 각종 연구기관에도 확대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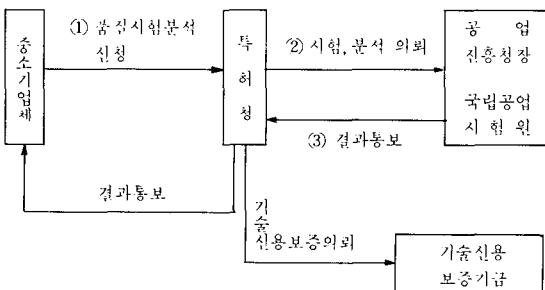


그림 3. 國立工業試驗院의 試驗分析 節次

2) 技術先進化 業체 우선선정

상공부의 기술선진화 육성방안을 근간으로 국가기술의 기반을 선도해 나갈 업체를 선정하여 이들 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허기술의 사업화 업체는 대상업체 선정시 10%의 가점이 부여되어 우선선정 대상으로 되어 있다.

특히 기술선진화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개발부서(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매년 매출액의 5% 이상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 특허기술의 사업화 업체는 마지막의 R&D 투자조건만 갖추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유리한 조건하에 대상업체로 선정된 특허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체는 각종 자금의 우선지원과 아울러 공업진흥청·중소기업 진흥공단·생산성본부·생산기술연구원등의 유관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기

술력 향상지원과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機械類, 部品, 素材의 國產化 技術開發 援助

어렵게 다져왔던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반전되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일 수입 절대액이 크고 수입선 전환이 곤란한 기술분야 품목의 국산화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 기술개발 대상업체를 선정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특히, 실용신안)기술의 사업화 품목은 우선 선정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중소기업은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이밖에 각 연구소 보유 고가장비의 개방, 활용지원과 생산기반 기술지원, 기술개발자금지원,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상공부의 추천요청에 따라 특허기술 사업화 업체를 추천·선정되게 하고 있는데 지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체는 한국발명특허협회에 신청을 거쳐 추천을 통해 하거나 아니면 상공부에 직접 신청을 함으로써 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4. 經營 및 販賣支援

특허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이외에 이들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가능토록 함으로써 수요의 창출과 시장조성을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団体 隨意契約에 의한 物量配分時 우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추천을 거쳐 상공부장관이 단체 수의 계약 대상품목을 고시하게 되면 공공기관들이 업종별 협동조합과 단체 수의 계약을 하고, 조합은 수혜기준을 정해 업체별로 물량을 배분한다.

특허받은 제품은 여기서 각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의 수혜기준에 가점을 부여하므로 물량배분이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되는데 조합별로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는 우선적으로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만 한다.

2) 特許技術事業化 製品의 우선구매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지원 요청시 제품을 관광하는 주무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수요기관·단체등에 우선구매 요구하여 중소기업자의 제품에 대한 시장조성을 도모하고 있는 우선

구매지원에서도 특허기술의 사업화 제품이 우선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주무부 장관은 공공기관·민간단체들에 대해 우선구매 요구나 권고 밖에 할 수 없으며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 지원사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시된다.

3) 우수발명품의 展示支援

중소기업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제품을 일정기간동안 전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의 대외적 홍보, 매매알선, 유통상담과 아울러 기업화 촉진을 가능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현재 KOEX내의 발명장려관에 우수발명품 상설전시장을 마련 연중무료로 전시·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9월, 10월경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입상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한국종합전시장에 전시하여 일반에게 관심시키도록 하고 있다.

5. 稅制支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업체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해줌으로써 신기술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며 개발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인제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

즉 특허기술을 이용해 창업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자는 수도권에서 창업시는 설립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그 다음 2년간에는 30%를 감면받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업화하는 경우는 각각 100%,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세제이다.

이밖에 특허기술을 최초로 사업화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投資稅額이 공제되는데 사업화를 위해 투자한 자산에 대해 투자액의 3/100(국산 기자재의 경우 10/100)을 당해년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사업화용 자산의 30/100(국산 기자재의 자산인 경우 50/100)을 당해년도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해 줄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

이와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자는 해당품목의 주무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체임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한 연후에 소관 세무서나

관할 지방행정기관 지방세 담당부서에 신청을 거쳐야 한다.

IV. 実效性 있는 支援政策開發에의 계속적 노력

앞에서도 잠깐 언급된 것과 같이 정부의 産業財產權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할이 技術開發 결과의 권리 형성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만족스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허가 지배하게 될 21세기를 10년정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첫 출발단계에서부터 완벽한 것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특허청이 새로이 시도하고 있는 본 정책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없지는 않으나 계속적인 제도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계속,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자가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租稅減免法 개정시 기존의 중소기업자에게도 특허기술을 최초로 사업화 하는 경우 創業中小企業에 준하는 稅制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외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전담부서를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종국적인 주체적 개인이나 중소기업자가 국가산업에의 기여도가 높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우수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 결과를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기술전쟁시대라 불리고 있는 현대의 後期産業社會에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제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부단한 성장·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

筆者紹介

柳 明 鉉

1940年 12月 19日生

1973年 8月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1967年 10月 서울지방병무청 근무

1976年 11月 상공부 동력개발국 에너지총괄과 근무

1985年 7月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물자국 구매과장

1987年 6月 특허청 장실 비서관

1989年 3月~현재 특허청 관리국 지도과장